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9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523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변 론 종 결 2020. 4. 7.

판 결 선 고 2020. 4. 28.

주 문

1. 피고가 2019.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4,159,080원, 지방교육세 5,559,050원, 농어촌특별세 2,784,01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9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B은 1988년 경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기업인 C를 설립하여 경영하였고, 2014. 10. 20. 고압가스충전업 및 판매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기업인 D를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이전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6. 10. 6. 원고를 설립하고 D의 토지, 건물 등 자산을 현물출자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 [redacted]시 E 공장용지 3,475㎡[1] 및 E 지상 건물[F동 205㎡ 일반공장(창고), G동 101.25㎡ 일반공장(창고) 및 27㎡ 일반공장(사무실) 등] (이하 위 토지와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6.자 B으로부터의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11. 18. 이 사건 부동산 등 D로부터 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5. 29. 법률 제1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57조의2 제4항 본문에 따라 각 자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라. 한편 B은 2013. 10. 11 H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임대료 월 1,500,000원, 임대차 기간 2013. 10. 10.부터 2018. 10. 10.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중 위 임대 부분이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운영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가 자산 취득시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인 설립 목적과 달리 이 사

1) 2018. 2. 2. 분할로 인하여 1185㎡를 원주시 I에 이기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9

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는 사유로 2019. 10. 1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세목	납기 내 세액
취득세	64,159,080
지방교육세	5,559,050
농특세	2,784,010
합계	72,502,140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2. 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은 D를 운영하던 때부터 사업 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두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원고가 그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체적 세목은 다음과 같다.

세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관련법령
취득세	1,071,067,584	4%	42,842,700	지방세법 제10조 - 제17조
지방교육세	21,421,350	20%	4,284,270	지방세법 제151조
농특세	21,421,350	10%	2,142,130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합계			49,269,100	-
가산된 세액*			23,233,040	-
납기내세액			72,502,140	-

* 위 구체적 세목 중 가산된 세액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세목	구분	대상금액	세율	감면액	가산된 세액	관련법령
취득세(부동산)	일반무신고	42,842,700	20%	0	8,568,540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취득세(부동산)	납부불성실	42,842,700	0.03%*1039	0	12,747,840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	4,284,270	0.03%*1039	0	1,274,780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농특세	납부불성실	2,142,130	0.03%*1039	0	641,880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9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2016. 7. 29.자 정관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사업 목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 설립 목적과 달리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4.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해당재산을 '처분(임대)'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전환시 그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는 점에 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문언과 법인전환시 현물출자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여 주는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의 '처분(임대)'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이후 이전에 영위하였던 사업, 법인의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그 자산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9

임대 또는 처분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의 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12호증 및 을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및 법인전환 전 사업체의 사업 기간 및 형태, 회사의 법인 전환 경위, 임대차계약 기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법인의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새로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 이전의 개인사업체 D의 사업목적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B은 2013. 10. 1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H에게 임대료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0.부터 2018. 10. 1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② 그 법적 형태에 변화가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이전의 개인사업체인 D와 원고 사이에 기업의 소유자, 경영주체, 자산, 주된 사업 등의 측면에서 연속성 및 유사성이 인정된다.

③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음으로 인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을뿐 아니라, 그것이 원고를 지배하고 경영하는 B의 의사에 부합하는 법률관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고가 법인 설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 임대한 경우가 아니다.

④ 원고는 2016. 12. 12. 정관을 변경하여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추가하였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D를 운영한 B과 H 사이에 2013년 경 체결된 점, 정관 변경 시점은 이 사건 처분시로부터 약 3년 전일뿐 아니라, 취득세 신고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9

(2016. 11. 18.)이나 부동산 취득일(2016. 12. 2)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설립 목적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누락된 것이 취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의 추징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각 가산세 부과·징수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9

별지

관계 규정의 표시

■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5. 29. 법률 제1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9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면서 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3) 1)과 2) 외에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9

■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12.31>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9

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끝.